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

(강감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9
----------	-----

발의년월일 : 2015년 6월 22일

발 의 자 : 강감창·박준희·유광상·김희걸·
이승로·김동율·문형주·송재형·
박성숙·박중화·신건택·황준환·
김진수·우미경·이성희·도문열·
강구덕·이숙자·남창진·이상묵
의원(20명)

1. 주 문

- 현행 「도시철도법」에 적용을 받는 노면전차는 도로 위를 운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독립 선로로 운행하는 철도 위주의 법령 체계 내에서는 건설 및 운영에 한계가 존재하고,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인 “차마”를 정의할 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있어 현행 법제도 내에서는 사실상 도로상 노면전차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정부가 확정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위례신도시 시민들의 극심한 생활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2013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위례신도시는 현재까지 대중교통 수단 등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해 생활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며, 특히 미흡한 대중교통 공급문제로 위례신도시 관련 철도시설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정부(국토교통부)는 2014년 5월 12일 위례선 노면전차 사업을 포함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여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으나, 현행 「도시철도법」에 적용을 받는 노면전차는 도로 위를 운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독립 선로로 운행하는 철도 위주의 법령 체계 내에서는 건설 및 운영에 한계가 존재함
- 또한,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인 “차마”를 정의할 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있어 현행 법제도 내에서는 사실상 도로상 노면전차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이미 정부가 확정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위례신도시 시민들의 극심한 생활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법제도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바,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기타사항: 없음

4.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나. 정 부 :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

2013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위례신도시는 현재까지 대중교통수단 등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해 생활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며, 특히 미흡한 대중교통 공급문제로 위례신도시 관련 철도시설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국토교통부)는 2014년 5월 12일 위례선 노면전차 사업을 포함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여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철도법」에 적용을 받는 노면전차는 도로 위를 운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독립 선로로 운행하는 철도 위주의 법령 체계 내에서는 건설 및 운영에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인 “차마”를 정의할 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있어 현행 법제도 내에서는 사실상 도로상 노면전차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정부가 확정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위례신도시 시민들의 극심한 생활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법제도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바,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5.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